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9.

발의자 : 송갑석 · 정세균 · 홍의표

설훈 · 이수혁 · 이훈

박광온 · 김병관 · 권칠승

김해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그러나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 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1항, 제20조제2항, 제20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3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700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또는 <u>700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--- <u>3천 만원</u>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